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1. . . (제 회)	

사회재난구호및복구비용부담
기준등에관한규정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전해철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1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상위법(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)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, 특별재난지역
(사회재난에 대한) 선포 시, 매번 중대본 의결을 거쳐 지원하는 항목을
명문화하고, 이재민의 간접지원 등에 필요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규정을
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
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농·어·임·염생산업의 피해시설 지원 규정 신설(안 제3조제1항제1호)

재난에 의해 주 생계수단으로 사용되는 농·어·임·염생산업의 피해가
발생할 경우, 복구비 지원

나. 주택철거비 및 감정평가비·손해사정비 지원근거 신설(안 제3조제1항
제3호)

주거지 복구시 소요되는 철거비용 및 객관적인 피해규모 산정을 위한
감정평가·손해사정 비용 지원

다. 간접지원 등에 필요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규정 신설(안 제6조의2 신설)

라. 자구수정을 통한 미반영된 위임사항 명시(안 제1조)

4. 주요 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라. 기 타 :

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66조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66조제1항, 제2항 및 제4항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제1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바. 주 생계수단(농·어·임업 및 염생산업 등)으로 사용되는 사유 시설에 피해를 입은 자의 복구비 지원

제3조제1항제3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마. 주택 철거비
- 바. 감정평가비 및 손해사정비

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의2(피해사실확인서) 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자(그 대리인을 포함한다)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,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

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제3조제2항 [별표], 제5조제2항 [별지 제1호 서식], 제6조의2 [별지 제2호 서식] 및 [별지 제3호 서식]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피해사실확인서

발급번호: 제 호

피해자	주소	
	성명	생년월일

피해 내용

대상	단위	피해 규모	피해물의 소재지	피해 일시	재해의 종류

용도	
----	--

제출처	
-----	--

위 사람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에 위와 같이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.

20 년 이 일

신청인: 성 명 (인)

생년월일

주소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위 사실을 확인함.

이
유
인

특별자치시장 · 특별자치도지사 · 시장 · 군수 · 구청장

직인

※ 이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개월간 유효합니다.

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

발급 번호	피해자			피해 내용			용도	제출처
	주소	성명	생년월일	대상	피해 규모	피해물의 소재지		

< 신 · 구조문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가 부담하거나 보조하는 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66조제1항, 제2항 및 제4항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.
제3조(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) ① 국가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호 및 복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조한다.	제3조(구호 및 복구 사업 비용의 부담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생활안정지원: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(이하 “재난피해자”라 한다)의 생활안정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구호 및 지원 가. ~ 마. (생략)	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
<신 설>	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바. 주 생계수단(농·어·임

2. 간접지원: 재난피해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지원 가. ~ 마. (생략) 3. 피해수습지원: 사회재난 피해수습을 위하여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가. ~ 라. (생략)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② (생략) 제6조(간접지원의 실시 등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<u>업 및 염생산업 등)으로 사용되는 사유시설의 피해를 입은 자의 복구비 지원</u> 2. ----- ----- ----- 가. ~ 마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----- 가. ~ 라. (현행과 같음) 마. 주택 철거비 바. 감정평가비 및 손해사정비 ② (현행과 같음) 제6조(간접지원의 실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제6조의2(피해사실확인서) ① 사회재난 발생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자가(그 대리인을 포함한다) 그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사항을 작성하여 피해시설이 있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</u>
--	--

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의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,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·관리하여야 한다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복구지원과	
연 락 처	044-205-5318